

광주지방법원 2022. 4. 7 선고 2021나53565 판결 [점유회수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4. 7 선고 2021나53565 판결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1. 19 선고 2019가단82605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유한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

담당변호사 곽현준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길환

변론종결 2022. 3. 17.

판결선고 2022. 4. 7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. 1. 19. 선고 2019가단82605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(주)C C/T 및 좌대 분실물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상호, 판사 송인경, 판사 김진만

별지